

의안번호	제2789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 사항	
----------	--

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발의자	김석한
발의연월일	2024. 6. 25.

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(김석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8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 김석한 의원(1인)

찬 성 자: 최을석, 우정욱, 최두임,
허옥희 의원(4인)

1. 개정이유

- 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특정 의원이 여러 직에 후보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의원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,
- 현재 고성군의회 회의 운영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8조의2)
 - 입후보자 등록 신청에 관한 별지 제1호서식 첨부 (안 제8조의2제1항)
 - 후보자 사퇴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 첨부 (안 제8조의2제3항)
- 방청의 허가 및 통지에 관한 사항 개정 (안 제76조)
 - 방청의 허가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 첨부 (안 제76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
-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31호
 - 예고기간: 2024. 6. 25.(화) ~ 6. 30.(일) [5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4. 본 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제8조의3 및 제8조의4로 하고,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)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해당 선거 2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.

③ 입후보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입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 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최다선의원을,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,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⑤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

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.

제76조의 제목“(방청의 허가)”를“(방청의 허가 및 통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의장은”을 “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,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방청의 허가통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.

별지 제1호, 별지 제2호,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후보자 등록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
성명(한글)		생년월일	
주소(도로명)			
연 락 처	(주택)	(휴대폰)	
선거구 명		소속 정당명	
후 보 자 등록직위	<input type="checkbox"/> 의장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의장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고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 등록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0px;">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0px;">위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0px;">고성군의회사무과장 귀하</p>			

후보자 사퇴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
성명(한글)		생년월일	
주소(도로명)			
연 락 처	(주택)	(휴대폰)	
선거구 명		소속 정당명	
후 보 자 등록직위	<input type="checkbox"/> 의장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의장		
「고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를 사퇴합니다. 년 월 일 위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
고성군의회사무과장 귀하			

고성군의회 방청허가 신청서

방 청 인	소 속 (단체명)			
	성 명 (대표자 등)		직 업	
	생년월일		연락처 (E-mail)	
	주 소			
방 청 인 원		명		
방 청 회 기		고성군의회 회(임사회 / 제 차 정례회)		
방 청 구 분		일반 방청 / 단체 방청 / 장기 방청		
방 청 일 시		년 월 일() 시		
방 청 장 소		※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기재		
방 청 목 적				
방청의 제한 (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79조)	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함. 1.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. 술기운이 있는 사람 3.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4.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		
위와 같이 의회방청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(대표) 성 명 (서명 또는 인)				
고성군의회의장 귀하 고성군의회 ○○○○위원회 위원장 귀하				

※ 본회의 개의일 전달까지 제출된 신청서에 한함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8조의2(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)</u></p> <p><u>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해당 선거 2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.</u></p> <p><u>③ 입후보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입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 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최다선의원,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, 다선의원이</u></p>

제8조의2 · 제8조의3 (생략)

제76조(방청의 허가)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.

<신설>

<신설>

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⑤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.

제8조의3 · 제8조의4 (현행 제8조의2 및 제8조의3과 같음)

제76조(방청의 허가 및 통지) ① 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,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---.

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3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방청의 허가통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.

별첨**관계법령(발췌)****□ 지방자치법**

제83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